

# 대구대학교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상호협력 협약서

대구대학교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학문적 교류와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인식하고 연구협력, 각종 지식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호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한방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2. 세미나, 연구발표회 등의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3. 학술자료, 출판물 등 지식정보의 교류
4. 국가연구과제의 공동제안 및 수행
5.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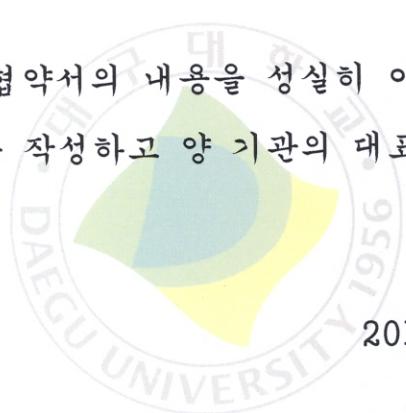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한 연구·학술·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이 협약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개별 연구협정에 따른다.

제5조(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매 3년마다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1. 11.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총장 흥덕률

~  
~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DGOM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Daegu Gyeongbuk Institute for Oriental Medicine Industry

원장 이형호

이  
~  
~

경북 경산시 갑제동 440-22